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668 제출연월일: 2008. 11.

제 출 자:울산광역시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○ 신설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세분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편의를 도 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체육시설의 사용신청·허가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함(안 제6조제 2항과 제3항)
- 나. "사용료 징수대상"에 "인조잔디축구장"을 추가(안 제7조제1항제3 호)
- 다. "사용료의 감면기준"을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8조)
 - ㅇ 사용료 면제
 - 국가 ·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각종 행사
 - 구 단위 체육행사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ㅇ 사용료 감면
 - 불우청소년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국가보훈대상자, 유공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), 장애인: 50/100
 - 12세 이하의 어린이, 청소년(13세~18세),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 상으로 하는 행사 : 30/100

라.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중 "인조잔디축구장" 사용료 규정을 신설(안 별표 1)

[별표 1] 체육시설 전용사용료(제7조제2항 관련)

(단위:원)

	1 분	<u>평일</u>	토·일·쨞 일	<u>비고</u>
테니스장	코트당	10,000		3시간 기준 사용료임
,	<u>월 사용료</u>	15	,000,	1인 기준 사용료임
ماح عاداخ تاعا	<u>체육경기</u>	25,000	<u>40,000</u>	<u> 2시간 기준</u>
인조잔디축구장	체육경기외	<u>50,000</u>	80,000	<u> 2시간 기준</u>

3. 근거법규

- ○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조
- ○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
- 4. 개정조례안 : 붙임
- 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6. 참고사항
 -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(2008.10.22 ~ 11.11)

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"(체육시설의 이용방법 등)"을 "(체육시설의 이용방법 및 사용신청·허가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, 제2항, 제3항을 각각 제1항, 제4항으로 하며,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고로 갈음한다.
- ③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시설을 이용(연습사용)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.

제7조제1항 중 "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"를 "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"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인조잔디 축구장

같은 조 제3항 중 "100분의 20"을 "100분의 50"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사용료의 감면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사용료 면제

가.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각종 행사

나. 구 단위 체육행사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사용료 감면

- 가. 불우청소년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국가보훈대상자, 유공자(국 가유공자, 독립유공자), 장애인: 50/100
- 나. 12세 이하의 어린이, 청소년(13세~18세),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: 30/100

제10조의 제목 "(사용의 정지)"를 "(사용의 허가취소 및 정지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정지"을 "허가취소 또는 정지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"체육시설의 유지·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"를 "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"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사용료는 납부하지 아니한 때
- 4.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제1항 중 "직접"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"면제"를 "감면"으로 한다.

[별표 1] 체육시설 전용사용료(제7조제2항 관련)를 다음과 같이 하고

(단위 : 원)

				(단위 : 전)
	구 분	평일	토・일・광함	<u>비고</u>
테니스장	코트당	<u>10,</u>	000	3시간 기준 사용료임
_1_0	월 자유사용료	<u>15,</u>	000	1인 기준 사용료임
ムショーショ	체육경기	25,000	40,000	<u> 2</u> 시간 기준
<u>인조잔디축구장</u>	체육경기외	<u>50,000</u>	80,000	<u> 2시간 기준</u>

"단, 만60세 이상 사용자에 대하여는 월 자유이용료를 10,000원으로 할 수 있다"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 대비표

혀 햇 개 정 안 제6조(체육시설의 이용방법 및 사용신청 · 허가 등) 제6조(체육시설의 이용방법 등)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중 일부 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은 다. 승인대상 체육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. <신설> ②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 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고로 갈음한다. ③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시설을(연습사용) <신설>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. ③(생략) ④(현행과 같음) 제7조(사용료) ① -----다음 각 호의 체육시 제7조(사용료) ①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 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-----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1~2(생략) 1~2(현행과 같음) <신설> 3. 인조잔디 축구장 ③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 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 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분의50-----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 에도 1시간으로 본다. 제8조(사용료의 면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제8조(사용료의 감면) 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-----면제할 수 있다. 1.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각 1. 사용료 면제 <u>가.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</u> 종 행사 각종 행사 나. 구단위 체육행사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.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

혀 행

- 2. 구단위 체육행사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10조(사용의 정지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 제10조(사용의 허가취소 및 정지) ①-----할 수 있다.
- 1.(생략)
- 2.체육시설의 유지·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1. (현행과 같음) 인정될 때
- 3~4 <신설>
- 제16조(위탁관리) ①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을 직접 이용하는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 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 인 및 사용료의 징수 · 면제에 관한 사항 도 포함하여 위탁한다.

[별표 1]

체육시설 전용사용료(제7조제2항 관련) (단위 :

원)

<u>시설명</u>	세부시설	<u>기준</u>	금액	비고
성안생활		코트당	10,000	<u>3시간 기준</u> <u>사용료임</u>
체육공원	테나장	월자유용료	15,000	1인기준
		<u> </u>	15,000	<u>사용료임</u>

단, 만60세 이상 사용자에 대하여는 월 자유이용료를 10,000원으로 할 수 있다.

개 정 안

- 2. 사용료 감면
 - 가. 불우청소년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국가보훈대상자, 유공자(국가유공자, 독립 유공자), 장애인 : 50/100
 - 나. 12세 이하의 어린이, 청소년(13세~18세),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: 30/100

취소 또는 정지-----

- 2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- 3. 사용료는 납부하지 아니한 때
- 4.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
제16조(위탁관리)	(1)
✓	

2)-	 		 	
	 ス	} 뼈	 	

[별표 1]

체육시설 전용사용료(제7조제2항 관련) (단위

원)

		_			
Ē	<u> </u>	<u>평일</u>	<u>토·일·공</u> <u>훼</u>	비고	
메 1 & 71	코트당	10,	10,000		
<u>테니스장</u>	월 지유시용료	<u>15,</u>	.000	1인기준 사용료임	
인조잔디	체육경기	25,000	40,000	<u>2</u> 시간 기준	
축구장	체육경기외	50,000	80,000	<u>2</u> 시간 기준	

<삭제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 안 번호 668)

1. 의 안 명 :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심사경과

○ 제 출 일 자 : 2008. 11. 13(목)

O 제 출 자: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○ 위원회회부 : 2008. 11. 13(목)

O 위원회상정 : 2008. 12. 1(월)

3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
○ 신설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료 의 감면규정을 세분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체육시설의 사용신청·허가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함 (안 제6조제2항과 제3항)
- "사용료 징수대상"에 "인조잔디축구장"을 추가(안 제7조제1항제3 호)
- "사용료의 감면기준"을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8조)

ㅇ 사용료 면제

- 국가 ·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각종 행사
- 구 단위 체육행사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
-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

ㅇ 사용료 감면

- 불우청소년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국가보훈대상자, 유공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), 장애인: 50/100
- 12세 이하의 어린이, 청소년(13세~18세),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: 30/100
-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중 "인조잔디축구장" 사용료 규정을 신 설 (안 별표1)

[별표 1] 체육시설 전용사용료(제7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	분	평일	토・일・공휴일	비고
rih 12 zi	코트당	10,000		3시간 기준 사용료임
테니스장	월 자유사용료		15,000	1인 기준 사용료임
인조잔디축구	체육경기	25,000	40,000	2시간 기준
장	체육강기외	50,000	80,000	2시간 기준

4. 근거법규

- ○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조
- 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

5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(2008. 10. 22 ~ 11. 11)

6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방영환)

-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기존 조례에서 태화강둔치 인조잔디 축구장이 준공됨으로 인하 여
- 기존 체육시설에다 "인조잔디 축구장"을 추가하였으며 체육시설 의 이용방법 및 사용신청 허가 등의 조항을 구체화 하였 고
-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의 가산한 금액을 100분의 50으로 증액하므로 약간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서 사용료 면제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였으므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
- O 다만, 제16조에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"시설물을 직접 이용하는 체육관련 단체"에서 "시설물을 이용하는 체육관련 단

체"로 "직접"이란 용어를 삭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 구됨.

7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

개	정	안			수	정	안
---	---	---	--	--	---	---	---

항 관련)

(단위 : 원)

평일 토・일・ 구 분 비고 괢일 3시간 기준 코트당 10,000 테니스 사용료임 장 월 1인기준 15,000 자유사용료 사용료임 25,000 40,000 2시간 기준 인조잔 체육경기 디축구 80,000 2시간 기준 체육경기외 50,000 장

<u>(신설)</u>

[별표 1] 체육시설 전용사용료(제7조재 | [별표 1]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세 조제 항 관련)

(단위 : 원)

Ţ	그 분	평일	토·일·공 힅	비고
rllı l & zl	코트당	10,000		3시간 기준 사용료임
테니스장	월 지유시용료	15,	000	1인기준 사용료임
인조잔디	체육경기	<u>25,000</u> (35,000)	<u>40,000</u> (50,000)	2시간 기준
축구장	체육경기외	50,000	80,000	2시간 기준

괄호안의 요금은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(단체포함) 사용시 요금임.